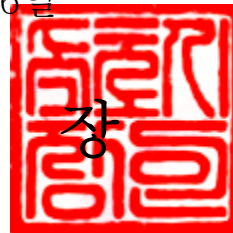


청호동 수산물 직판장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

청호동 수산물 직판장의 안전한 시설물 관리와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청호동 수산물 직판장 실외에 CCTV를 설치 예정인 바, 『공공기간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』 제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『행정절차법』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,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속초시 해양수산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1년 8월 26일

속 초 시 장



1. 공 고 기 간 : 2011. 8. 26 ~ 2011. 9. 15 (21일간)

2. 의견제출

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속초시 해양수산과로 방문,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수정제출안 및 그 사유

나.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), 주소 등

다. 제 출 처 : 속초시청 해양수산과

라. 제출방법

◦ 우편 : 강원 속초시 중앙로 183(중앙동 469-6) (우편번호 217-030)

◦ 전화 : 033-639-2091

◦ 팩스 : 033-639-2338

마.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

3. 설치 장소 및 촬영범위

가. 설치장소 : 강원 속초시 청호동 1341-1 청호동 수산물 직판장 후면

나. 촬영범위 : 동 시설물 후면(주차장쪽) 일대

다. 촬영시간 : 00:00~24:00 (24시간 촬영)

별첨 1. 의견제출 양식 1부.

2. 설치 예정지 사진 1부.

청호동 수산물 직판장 CCTV 설치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서

사 업 명		청호동 수산물 직판장 CCTV 설치사업					
의견 제출자	성명 (개인/단체)				생년월일 (사업자번호))		
	주 소				전화번호		
행정예고(안)		수정제출(안)			사 유		

방법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11년 월 일

제 출 자

(서명 또는 인)

속 초 시 장 귀하

현 장 사 진



CCTV 촬영범위